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19호 2018. 5. 1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149호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3
- 삼척시 조례 제1150호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 삼척시 조례 제1151호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삼척시 조례 제1152호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558호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41
- 삼척시 규칙 제559호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4
- 삼척시 규칙 제560호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55
- 삼척시 규칙 제561호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6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64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57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410호 삼척시 도시재생사업 참가자 중심으로 대학로(창업 등)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 63
- 삼척시 공고 제413호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66
- 삼척시 공고 제41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92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제20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4. 30.)에서 의결된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8년 5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1149호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요금의 면제)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3~8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로서 독립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등급 해당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해당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국가유공자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으로서 본인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본인의 비사업용 차량에 동승하고 타인이 대리운전 하는 경우
6.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단, 표창 등을 수상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함)
7. 삼척시 통·이장에 재직 중인 자로서 통·이장 증명서를 소지한 운전 차량 1대
8.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및 가산금)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면제차량은 제외한다.

1. 시책 참여 차량(5부제 등)으로 시책참여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 : 100분의 20(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3. 삼척시에서 지정한 병역명문가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 : 100분의 50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100분의 50
5.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차량 : 100분의 50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지 및 주차표 등)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며,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표와 영수증, 회수주차권, 정기주차권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삼척시에 소재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 있거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3. 시에서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설치한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은 공영주차장 관리자로서의 관리규정과 계약 등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료의 산출)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고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 산출 방법은 수입과 지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1. 삼척시 재산 대부분료 또는 도로점용료 적용

가.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삼척시 재산 대부분료 적용

구 분	선 정 방 법	납 부 금 액	납 부 방 법
제7조제1항 제1호~제4호	경쟁가격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 재산대부료상당액	제9조제1항 적용
기타의 경우	경쟁가격	입찰가격	제9조제1항 적용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산출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적용

2. 수입과 지출 예상수익 적용

가. 수입항목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시장이 정하는 수입

나. 지출항목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 유지비,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선정방법에 대한 요금 산출 시 시장이 인정하는 요건으로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위탁료의 납부) ① 관리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료 전액을 매년 1월말까지 일시불로 납부한다.
2. 위탁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와 함께 분기별로 2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납기는 1월 말일, 7월 말일로 하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 15% 이내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위탁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와 함께 분기별로 4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납기는 매년 분기 초 1월 말일, 4월 말일, 7월 말일, 10월 말일로 하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15% 이내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1항의 기한까지 위탁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2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표와 같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 (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 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득한 후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민간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 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갱신 심사를 거쳐 주차장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담당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를 적용한다.

제 2 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9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관리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에서 정해진 관리시간 내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제2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

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21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 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실시계획 인가 또는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여성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용주택 부설주차장,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4조(임시공용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임시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 토지소유자의 토지무상사용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임시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대상 토지의 사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토지 무상사용 시에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대상토지의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

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26조(이용제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운반·기계기구 등은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

제27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주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는 제외한다.

②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차종 및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2. 제한시간과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제한사유와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등)

제28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

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형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30조(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 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

퍼센트

②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31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32조(보조의 대상) 법 제19조제12항 및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람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 이용자 외 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 또는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

제33조(보조의 방법) ① 제32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 보조의 방법 및 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공사비의 반환) ① 제3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공사의 보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변경, 주차장 기능 미유지, 임의로 주차목적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5조(강제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 3 장 부 설 주 차 장

제36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강화기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강화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7조(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 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 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한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써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제 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자동차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

2.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형태가 도시미관에 부적합한 건축물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축물
 4. 기타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 ②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월정기 주차권 (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39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37조제1항에 따른 범위 안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 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

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 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40조(부설주차장설치비용 감면 등)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는 자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경우 설치비용의 50%를 감면한다.

제41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 용 엘리베이터 및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규모가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유도 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제43조(관리비)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44조(주차전용건축물)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 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4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되, 과징금 가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1항(별표 1의제3호)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1 회 주 차 권		1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2시간까지 (1구획당30분마다)	2시간초과 (1구획당30분마다)		주간	야간
요금	500	1,000	6,000	75,000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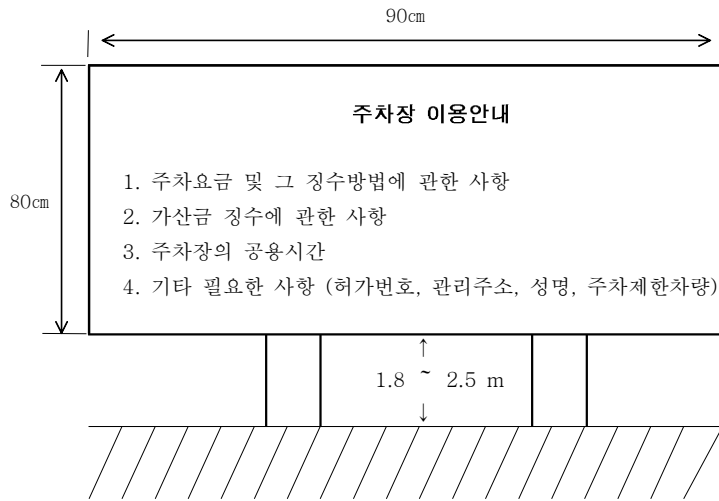
※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 고 -

-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최초 주차한 시간부터 10분까지는 무료이며 이후는 요금표와 같다.
-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야간으로 보며 야간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가. 4월 ~ 10월 09:00 ~ 20:00
나. 11월~ 3월 09:00 ~ 19:00
-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단, 대형버스 및 화물차를 위해 별도 설치한 주차구획은 본 요금의 3배를 징수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구획당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2]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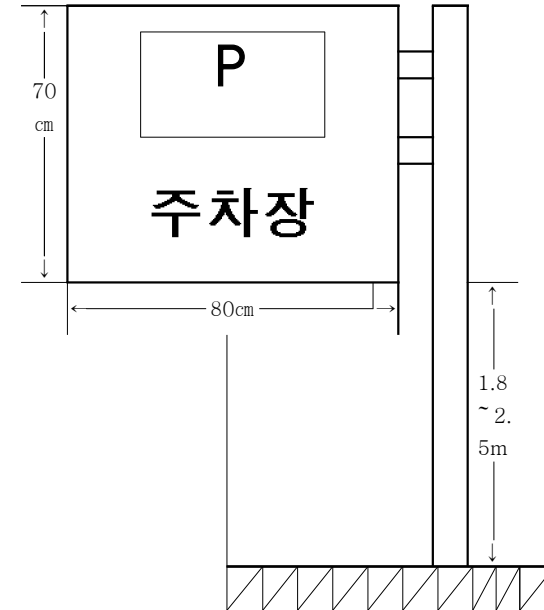
※ 비 고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 씨 (고딕)
노 상 주 차 장	알 미 늄 판	녹 색	흰 색
공영노외주차장	알 미 늄 판	녹 색	흰 색
민영노외주차장	알 미 늄 판	청 색	흰 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표 3]

노 외 주 차 장 표 지(제6조제2항 관련)



※ 비 고

재 료 : 알루미늄판 또는 아크릴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문자 및 기호(청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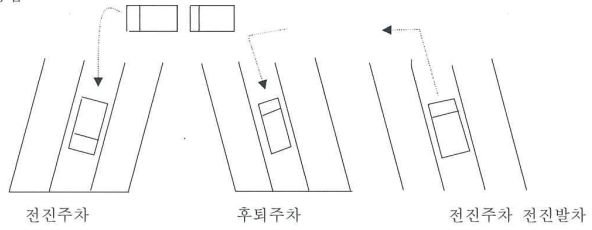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cm× 세로25cm)·문자(가로 17cm× 세로17cm)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를 처리하여야 함.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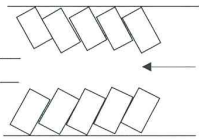
주차 방법 및 배치 기준 (제28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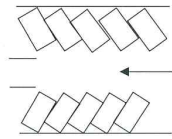


2.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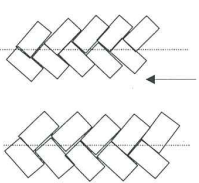
가. 30°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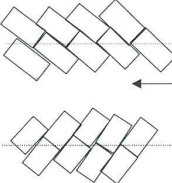
나. 45°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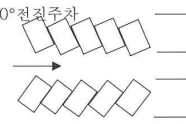
다. 45°교차주차(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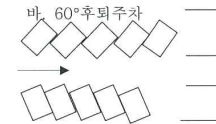
라. 45°교차주차(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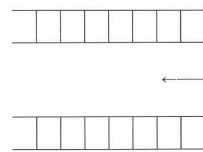
마. 60°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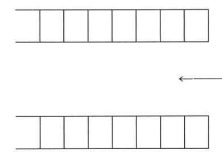
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A)



아. 90° 후퇴주차(B)



[별표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36조 관련)

시설물	설치대상 지역별 기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1. 위탁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20㎡당 1대 (시설면적/120㎡)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시설면적 150㎡초과: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 1대 ○시설면적 150㎡초과: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1홀당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정원 12명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골프장:1홀당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80㎡당 1대 (시설면적/280㎡)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20㎡당 1대 (시설면적/320㎡)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40㎡당 1대 (시설면적/240㎡)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비고

-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비도시지역은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제15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강화기준은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제38조제2항 관련)

(앞 면)

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용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삼척시장 (인)

※ 비고 :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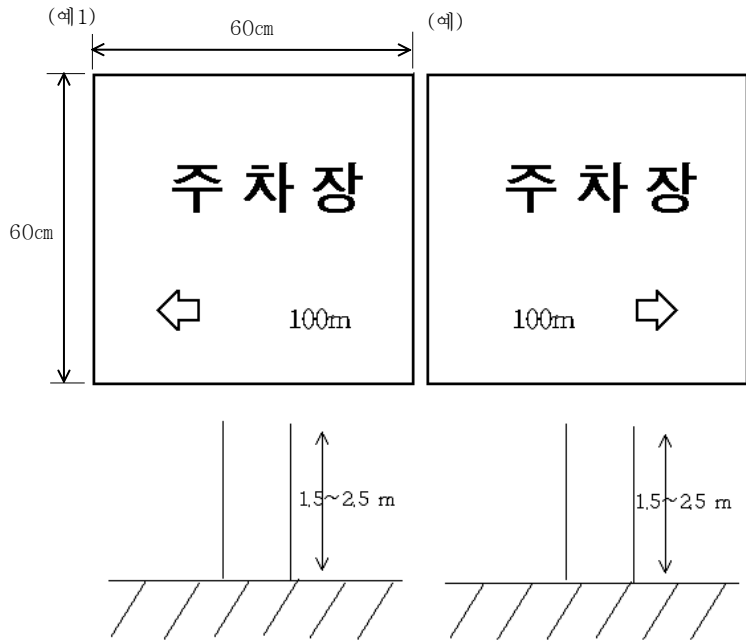
(뒷 면)

주의사항

1. 이 공영주차장 사용증은 삼척시장이 발행한 것임.
2. 앞면 표지 중 건축물의 위치, 사용기간, 이용 주차장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3. 이 공영주차장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4. 이 주차장 사용증은 지정된 주차장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노상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제6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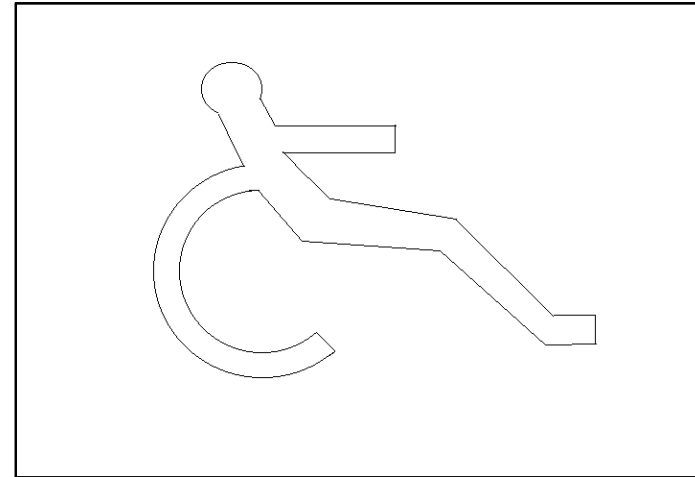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 (청색)
문자 및 기호 (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써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휠체어 사용자 전용 표지(제42조제4항 관련)



- 비 고 -

- 규 격
가. 표지판 : 40Cm×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28Cm×세로32Cm
-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을 사용한다.
- 방 향
휠체어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 (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4호서식>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제24조제1항 관련)

삼척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임시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붙여 사업 종료 후 1년간 토지의 무상사용과 부지정비 작업을 승낙하며, 공사시공은 물론 준공 후에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토지무상사용 조건】

1. 부지 평탄화 및 노면정지 후 부순 돌 등 혼합골재 부설
2. 콘크리트, 아스콘 등의 포장재 사용 불가
3. 건축 등 토지주의 부지 활용계획이 있을 시 부지 내 모든 주차차량을 즉시 이동조치 할 것

◎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예정면적(㎡)	등기부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붙임 : 토지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끝

20

승낙자(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심사표(제11조제2항 관련)

심사대상	수탁운영 기관단체	평가기관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심사항목	심사내용			
관리운영능력의 적정성	조직,인력,재무상태,회계관리 등	20점		
청렴 투명성	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20점		
성실성 및 친절도	근무시간 및 복장준수여부 민원, 민원처리 등	20점		
책임성	각종 보고 및 자료제출 준수여부, 조치명령 이행여부 등	20점		
기타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점		
심사위원 종합평가				
합계			100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갱신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조례 제33조제1항 관련)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 1. 주차장 설치위치:
- 2. 대지면적: m²
- 3. 주차장 명칭:
- 4. 주차장 형태
-
-
- 5. 주차장 규모: 연면적 m²
- 6. 노외주차장 설치(예정)일시:
- 7. 노외주차장 건축허가 일시:
- 8. 노외주차장 착공예정일:
- 9. 노외주차장 준공예정일:
- 10. 노외주차장 공용개시 예정일:
- 11. 사업효과

- 12. 그 밖의 특이사항

제20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4. 30.)에서 의결된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 장

2018년 5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1150호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를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을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개선 및 건강복지비 보조 등을 위한 사업” 으로 한다.

제5조 조문의 제목 “연료비 보조사업” 을 “연료복지비 보조사업 등”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3년 이상” 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를 “연료복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내용 중 “월동용 연료비(연료 구입권으로 지급)”을 “일정액 “의 생활용 연료비 등 복지비용(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생활 연료비 등 복지 카드권 발급 지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생활용 연료비 등 복지비용”이라 함은 연료구입비(유류, 가스, 연탄), 건강의료비용(진단, 진료, 약품)을 말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고, 주변지역 내에 소재를 둔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4. 30.)에서 의결된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8년 5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1151호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홍보물제작, 재해우려지역·시설 안내판 제작

마.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바.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사. 지방하천 내 소규모 준설, 풀베기 등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체계) 구축 및 보

수·보강

- 가.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자동 음성 통보시스템, 재난감시용 CCTV설치
- 나.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상시계측시설
- 다. 지진가속도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 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나.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 다.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 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 7.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9.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10.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삼척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조의 2(기금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4. 30.)에서 의결된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8년 5월 18일

삼척시 조례 제1152호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영사기”를 “프로젝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귀빈석을 제외한 좌석수”를 “좌석수”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5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3일”을 각각 “7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1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3일”을 “10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때”를 “때 : 50% 반환”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시장”을 “소장”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도 제6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8. 4. 24.)에서 의결된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8년 5월 18일

삼척시 규칙 제558호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표 등)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주차 시간의 산정) 주차 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간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제4조(주차 구획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부터 차량 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5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 할 수 있다.

제7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32조 규정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보한 사람을 말한다.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3m×5m이상
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3m×5m이상
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대문 안 면적 2.3m×5m이상
4.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건물 간 면적 3m×10m이상
5.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제8조(보조금의 산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 ①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건물주의 각서(별지 제6호서식)와 공사비 영수증, 보조금 입금 온라인 통장 사본, 청구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확인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와 내 집 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를 작성(별지 제8호서식)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보조금의 회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시 보조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연8%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기준(제9조제5항 관련)

구분		보조금액(차량 1대기준)		비고
		보조범위	지급한도액	
1	부지 내 화단, 건축물, 여유 공간 등의 일부를 정비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의 90% 이내	800,000원	
2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직각 주차시설)	설치비용의 90% 이내	1,100,000원	
3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평행 주차시설)	설치비용의 90% 이내	1,500,000원	
4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 이내	1,700,000원	
5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 이내	2,000,000원	
*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50만원 추가 지원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관련)

원 부				영 수 증				주 차 표			
번 호	주 차 장 소			번 호	주 차 장 소			번 호	주 차 장 소		
차 종	보 통 소 형	차 량 번 호		차 종	보 통 소 형	차 량 번 호		차 종	보 통 소 형	차 량 번 호	
입차 시간	시 분			입차 시간	시 분			입차 시간	시 분		
출차 시간	시 분			출차 시간	시 분			출차 시간	시 분		
주차 료	금 원정			주차 료	금 원정			주차 료	금 원정		
				상기금액을 주차료로 정히 영수함.				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전면)

(이면)전면은 카본지

(전면)이면은 카본지

[별지 제2호서식] (제2조 관련)

회 수 주 차 권

금 원권

발행일 : 년 월 일

※ 주의사항

- 이 회수권은 공영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삼 척 시 장 (직인)

삼척시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2조 관련)

정기주차권

금 원권

발행일 : 년 월 일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공영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삼척시장 (직인)

삼척시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 통지서(제5조 관련)

차량번호 귀하

주차장소	차종	사용일시	주차시간	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납부장소
	보통						
	소형						

※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삼척시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택) 직장)
주 차 장 설치계획	주 차 장 위 치		주차대수	
	형 태	(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주차		
	공사기간	착공 (. .) ~ 완공 (. .)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				
<접수자 확인사항>				
건축물관련 확인사항	연면적	m ²	대지면적	m ²
	주차시설 확보의무	대	건 축 주	
주차장설치 가능여부	진입도로 폭	m (차량진입가능 여부 확인)	종합의견	가능 불가능
	가옥 안 여유 공간			
담 당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비고 1. “접수자 확인사항”란은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기재
 2. 완공 후 제출서류: 건물주 각서, 공사비 영수증, 계좌번호

<별지 제6호서식>

각 서(제9조제2항 관련)

1.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m²

3. 보조금액 : 원

위 본인은 삼척시청에서 시행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만큼 주차장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하지 아니하겠으며, 향후 상기 사항을 위배하여 주차시설을 임의 변경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원금과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즉시 반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인)

삼 척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주차장 설치확인 결과 보고서(제9조제3항 관련)

결	담 당	담 당	과 장
재			

1. 설치개요

- 공사기간 : . . . ~ . . .
- 설치장소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호(통 반)
- 설 치 자 :
- 설치현황도

<주차시설 배치도>



2. 시설현황

- 주차대수 : 대(시설면적 : m²)
- 시설형태 : 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
- 설치비용 : 원(영수증 확인)

3. 첨부서류

- 건물주 각서 1부.
- 전·중·후 사진.
- 온라인 통장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제9조제3항 관련)

내집주차장 설치완료보고서(관리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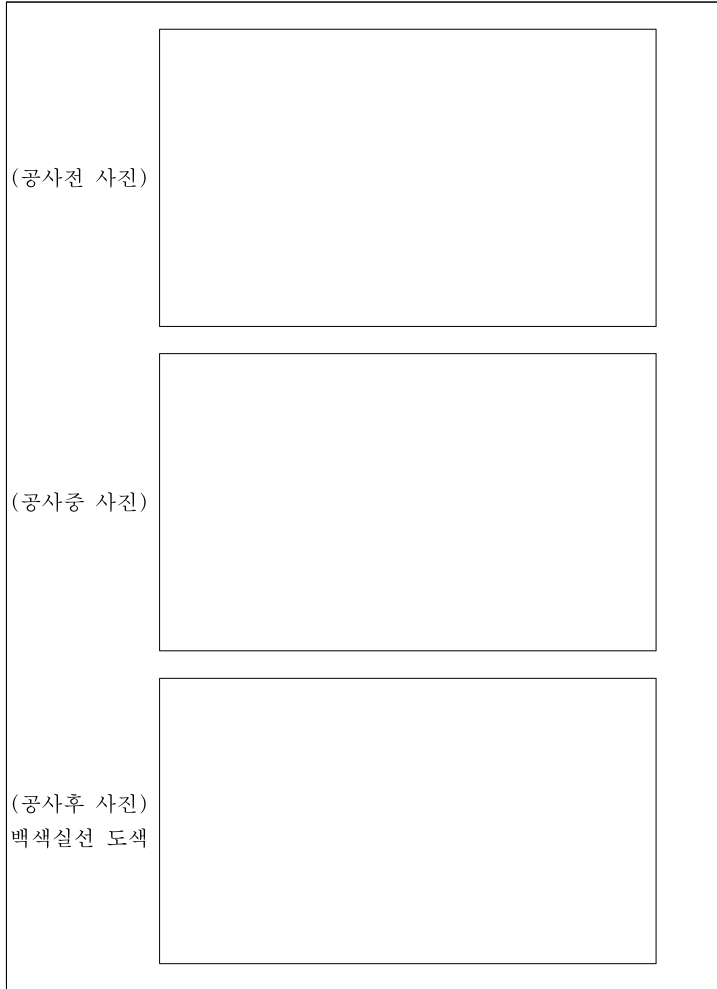
수신 : 삼척시장 년 월 일
참조 : 과장

1. 설치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1.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		주차시설	○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주차형태	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셔터(대문) 설치여부		공사시간	~
총설치비용	원	자비부담	원	보조금지원	원
1.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 매년 2회(5월, 10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기록 후 서명날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내집주차장 관리카드 뒷면>



2018년도 제6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8. 4. 24.)에서 의결된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8년 5월 18일

삼척시 규칙 제559호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신청 및 휴가)”를 “(사용신청 및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조례로 지원하는 기관·단체 행사

제8조제2항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부감면(기본시설사용료 50%, 부대시설사용료는 제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도 제6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8. 4. 24.)에서 의결된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8년 5월 18일

삼척시 규칙 제560호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금고약정서에 쌍방 서명날인 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이 금고약정 해지를 할·에는”를 “시장이 금고약정 해지를 할 때에는”으로 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도 제6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8. 4. 24.)에서 의결된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8년 5월 18일

삼척시 규칙 제561호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수욕장의 경계는 해수욕장 경계선 안으로 한다.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8 - 64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5. 18.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356 외2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5.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890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807	지역적 특성 반영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900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807	지역적 특성 반영	
3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906-17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807	지역적 특성 반영	
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산 7-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356	20180518	건물신축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동안)활용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763-1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미로, 노곡,근덕)연결 구간시점중지역명칭활용(미로, 근덕)	
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08-12, 208-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10-16	20180518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06-40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36-15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36-19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59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1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808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행정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계	24 건					
폐지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890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폐지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900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폐지	3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906-17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산7-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356	20180518	건물신축	20090626	역사인물 이승유의호(둔안)활용	
폐지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763-1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미로, 노곡, 근덕)연결 구간시 종점지역명칭활용(미로, 근덕)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08-12, 208-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10-16	20180518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폐지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06-40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폐지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36-15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폐지	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36-19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폐지	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59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폐지	1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808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폐지	1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864-48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폐지	1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874-80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폐지	1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874-104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부여	15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산31-14, 2-13	강원도 삼척시 삼척로 4246-38 (오분동)	20180518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	
폐지	1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고가리길 24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교가길분기)	
폐지	1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고가리길 30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교가길분기)	
폐지	18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무사길 71-15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폐지	19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무사길 222-36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폐지	20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길 74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부여	2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91-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바길 50-7	20180518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임원안길분기)	
폐지	2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적병길 94-58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지형지물명칭(적병산)활용(미로명하게노리)	
폐지	23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가노길 101-26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경지장리지역)	
폐지	2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반길 97	폐지	20180518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공고 제2018 - 410호

삼척시 도시재생사업 참가자 중심으로

대학로(창업 등)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삼척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대학로의 창업 등 활성화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시재생사업 참가자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5월 16일

삼척시장

대학로(창업 등)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삼척시 대학로(창업 등) 활성화를 위해 독특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 주십시오.

2018. 05. 16.(수) ~ 2018. 06. 22.(금)까지 삼척시 당자 지구 대학로를 경쟁력있게 육성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 합니다.

- * 우수제안자에게는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 동일한 내용은 우선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응모자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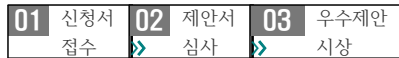
- ✓ 지역주민 ▷ 생대지구 대학로 상가 및 주변 거주 주민
- ✓ 대 학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학생

공모 주제는 대학로, 도시재생에 참여자 아이디어를 담아요!

제안 분야는

- ✓ 도시재생지구(대학로 등)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 ✓ 도시재생지구(대학로 등)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 ✓ 대학로 방문객(살비치 등) 유치를 위한 창의 아이디어 등

제안 접수 및 심사절차



- 제출기관 : 삼척시청 (특화산업과)
- ✓ 제안 신청
 - 우 편 :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특화산업과(033-570-3603)
 - F A X : (033) 570-3186
 - E-mail : kthwan9@korea.kr
 - 방 문 : 삼척시청 특화산업과
 -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 심사기관 : 전문가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제안자·공동제안자 인적사항 및 기여도% 제안제목, 개요, 구체적 실행계획,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작성

2단계 제안서 심사

- 외부 전문가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기준 : 대표성, 실행가능성, 경제성, 독창성 등

3단계 시상

- 심사발표 : 2018.07월 초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구분 : 대상 1인 50만원 상당, 우수 2인 20만원 상당
- * 시상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사후 관리

- 우수 제안자 중 실현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프로그램 참여 및 각종 특전 부여
- 창업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등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 공지,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하였거나 계류 중인 것
- 이미 채택된 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 불만의 표시
- 연구비 등을 보조받아 산출된 연구 결과물
- 기업 및 개인의 특정제품, 사업홍보와 관련된 것 등
- ✓ 옹된 제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대한 제안서는 삼척시에 귀
- ✓ 제안된 뒤 1년 이상 아무런 반응 없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제안에 대한 심사 여부 불결 시 상장 및 시상금 환상

*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특화산업과(033-570-3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서

수 신 : 삼척시장

접수번호

제안제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과명			
	핸드폰	이메일		
	참고사항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여도(%)

「삼척시민 제안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기타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개요	육하원칙에 의거 간단히 작성
③ 구체적인 실행계획 (세부전략 등)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④ 제안사항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 (사례를 들어 증명)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⑤ 기대효과	정성적/정량적 효과 창업 및 주민참여를 통한 인력창출효과 등

<주의사항> 본 제안사항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시의 지원에 의한 참여자 등이 아이디어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 시상금 반환 등 그에 따른 책임이 부여될 것임.

삼척시 공고 제2018-413호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05월 15일
삼척시장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간정보 관련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공간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 개정('17.8.1.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부합하는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수립
-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5개 항목을 각각의 장으로 상세하게 규정(제5장→제7장)

* 공간정보 보호를 위하여 ①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②분류기준 ③보호대책 ④공개 요건 ⑤사고 시 처리절차를 포함할 것을 명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리체계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제3장 공간정보 등의 보호 및 관리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4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감사·조사 및 교육 등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5장 보칙	제5장 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제6장 공간정보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치 등
	제7장 보칙

- 나. ‘보안책임’ 을 ‘보안책무’ 로 하여 보안의무 강화
- 다.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을 보안담당관으로 책무 상향
- 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임무에 ‘공간정보심의위원회 관리’ 조항 신설
- 마. 보안담당관에 대한 임명·교체 내용 상위기관 통보 조항 삭제
- 바. 비공개·공개제한·공개 공간정보 기본 분류기준을 본문에 명시
- 사. 보호구역 내 주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세부적인 조항 명시
- 아. 공간정보 新산업 창출, 국제행사 등을 위한 항공사진 해상도 완화 (50cm → 25cm)
- 자. 국가기간시설(7대 시설물)에 대하여 항공기, 선박 안전운항을 고려 보안성 검토 후 지도 표기
- 차. 해양공간정보 보안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 전 화 : 033 - 570 - 3948
 - 팩 스 : 033 - 570 - 3137
 - E-mail : han7679@korea.kr

- 붙임 1.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붙임 1】

삼척시 훈령 제 호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35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삼척시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삼척시와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제3조(보안책무)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본청, 소속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 지도·점검·감사·교육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1. 본 청 : 민원봉사과장
- 2.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 2.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교육 및 감사
- 4.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 5.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③ 본청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④ 보안담당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 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 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간정보 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정보 심의 요구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 및 간사
2. 각 실·과·사업소장
3. 읍·면·동장

- ② 위원회의 심의 방법은 회의 또는 서면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9조(공간정보의 분류 등)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비공개 공간정보
 -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이하 “공개제한”이라 할 수 있다)
 -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 ② 공간정보를 분류할 때에는 세부 속성(칼럼)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만 취급 할 수 있다.

- ② 비공개 공간정보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 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등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업무담당과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
 2. 보관책임자 부: 업무 업무담당 또는 업무 담당자

제11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가. 본청 : 업무담당과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
 - 나.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방지
3.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
 -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항목 등으로 구분
 -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
4.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5.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 ②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시 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가. 본청 : 공간정보유통망 담당과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
 - 나.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
-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영
-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설치 및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 4.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 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 5.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제13조(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 1.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 2. 비공개 공간정보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
- 3.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 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의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 5. 비인가 카메라·휴대폰·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방지
 -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 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계약서에 법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호의무·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회수 및 파기
- 5. 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간정보를 외주 용역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신원 확인·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 2. 계약서에 기밀 누설·유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명시
 -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대책
- ② 분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시장에게 보고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분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2 와 같다.

제5장 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기관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 1.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 2. 소속기관·단체 및 직책

- 3. 사용 목적 및 타당성
 - 4. 활용 후 관리대책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시장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분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6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치 등

제22조(보안지도) ① 시장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도지사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분청 및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 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
- 3. 공간정보의 유출·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 4. 그 밖에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도지사의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간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보안 관련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23조(보안점검) ① 시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교육) ① 시장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퇴직자가 있는 경우에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5조(보안 사고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사고일시·장소·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무단 이용
3. 법 제38조의 비밀의 누설·도용
4. 공간정보 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안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2.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4. 연도별 보안업무 수행지침
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법령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간정보 등급 분류기준

공간정보	등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개제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개제한	○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시설이 포함된 지도 - 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에 의한 7대 지하시설물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 아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통신 : 이동전화기지국(중계기 포함), 통신선로(지상 및 지하),

		위성송·수신센터 · 상·하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 정수장, 펌프장, 취수장, 가압장, 하수종말처리장 기호 · 가스·송유관 : 지상가스관, 지상송유관, 저장소 · 맨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정보	비공개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제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에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그 밖의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보안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 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반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도로명 사업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 시설명칭 및 시설명이 포함된 도로명 등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별표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삼척시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삼척시가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 라. 기타 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전 제3항의 상황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의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함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을 포함한다)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국과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실·국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함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반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반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되어 도착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장소

-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제8조제1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제 목	
회부근거	
회부기간	
주요내용	
요구자의 의견	

첨부서류 :

위와 같이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목록관리대장 (제9조제2항 관련)

기 관 구 분	시 도 구 분	관 리 기 관	관 리 부 서	관리담당자		목 록 작 성 일	시스템 명칭	레이어 명		정보의 주요내용 (레이어 설명)	구 속 범 위	데이터 구축 형태	데이터 유형		최초 생성 일자	갱신 주기	최종 갱신 일자	공 개 구 분	비용		공 공 실 적 (건)	비공 개/공개 제한 근거	비 고				
				성 명	직 칭			벡 터	레 스 터				구 분	금 액					정 수 근 거								

■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제11조제1항 관련)

관리 번호	제작 일자	제 목	형태	수량 (건)	보호 기간	보관 장소	비고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 (제13조제3항 관련)

일자	제 목	자료 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사유	열람·수령자		예고문	승인관
						소속	성명		

※ 자료 구분 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

■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관리대장 (제19조제3항 관련)

관리 번호	제공 일시	내 용	방법	열람·수령자		제공사유	비고
				소속	성명		

■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제19조제4항 관련)

신청인 신청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공 내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본인은 년 월 일 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에 사용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처벌
-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의 회수 및 사용금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

관 계 법 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

제35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① 법 제35조에 따른 보안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 공간정보의 관리부서 및 공간정보 보안담당자 등 보안 관리체계
2. 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유통망의 관리방법과 그 보호대책
3.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5.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유출·훼손 등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 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등 보안 관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민 병 노
연락처	(033) 570 - 3250

【붙임 4】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 토 사 유

삼척시 공고 제2018-41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18.5.15)되어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8.05.15. ~ 2018.05.29. (15일간)
3. 말소일자 : 2018.05.15.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에스더블유푸드시스템
	주 소 (대정상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245-4엘지클라트2차 501호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68-3	
	경량철골조 (1층:912㎡ 일반음식점)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5. 15.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